

제225회 임시회  
2004. 3. 30(화)

# 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 
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## 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  
- 2004년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,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3월 30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
  -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  
- 먼저,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
  -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과 관련하여,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의 2004년도 토요일휴무제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,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  
- 주요내용으로는
  - 조례의 제명인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”로 바꾸고,
  -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 -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고,
  - 관련 조례인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.

□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,

-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,
  -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과 관련하여, 2004년도 부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토요일무제 실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,
  -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난 2003. 12. 24 시달한 2004년도 지방교육 행정기관 토요일무제 시행지침에 의거, 토요일무제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,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  - 토요일무제 대상기관 및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,
  - 토요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, 토요일무제 대상기관과 미대상기관간의 원활한 행정처리상의 문제, 미대상기관 직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따른 불만 등 토요일무제 실시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처계획,
  - 조례의 제명중 '교육감소속'을 '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'으로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,
  - 제명을 변경하면서 조례 제13조,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, 제18조, 제22조, 제26조 등의 내용도 교육감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등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,
  -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구조가 1개과 수준의 의사국(정원 12명)으로 구성되어, 복무규정을 따로 정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현조례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'교육감 소속공무원'으로 표기된 조항은 제1조 목적규정에서 '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'을 '공무원'으로 표기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'공무원'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  - 또한, 본 조례의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"를 부칙조항을 이용하여, "충청북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"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례개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, 추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  - 검토 결과,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타시도 조례의 교육감소속 관련 내용을 별첨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
-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